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(약칭: 생활물류서비스법)

[시행 2025. 10. 1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제2조(정의)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제2장 택배서비스사업

제5조(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)

제6조(등록의 결격사유)

제7조(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)

제8조(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)

제9조(영업점에 대한 관리)

제10조(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)

제11조(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)

제12조(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)

제13조(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)

제14조(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)

제15조(등록의 취소)

제16조(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)

제3장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

제17조(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)

제18조(인증심사대행기관)

제19조(인증의 취소)

제19조의2(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)

제19조의3(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)

제19조의4(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)

제4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

제20조(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)

제21조

제22조(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)

제23조(행정적 · 재정적 지원 등)

제24조(조세에 대한 특례)

제25조(창업의 지원)

제26조(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)

제27조(표준화의 추진)

제28조(시범사업의 실시)

제5장 생활물류시설의 지원

제29조(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)

제30조(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

제31조(생활물류시설의 확보)

제6장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

제32조(표준계약서)

제33조(서비스약관)